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2차)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분들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 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부실시공,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I.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 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

2. 접수기간 : 2026. 8. 24.(월) ~ 9. 4.(금) 16:00까지

가. 현장접수 : 9.3.(목) ~ 9.4.(금) 16:00까지 / 2일간(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3.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

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기간(9.3.~9.4.)에만 현장방문접수 가능

나. 접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 등) 및 사업장 내 외부사진을 사전준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 홈페이지(www.uhdc.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접수 →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하기 → 제출서류 등 파일업로드 ※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현장접수 (9/3~9/4)	○ 사업 공고 확인 후 서류 작성, 제출서류 및 사업장 내 외부사진 준비하여 대표자 직접 현장 방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개별 신청 원칙)

다.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4. 선정발표 : 2026. 9. 18.(금)(예정)

- 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여부 공지 예정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선정여부 개별 통보 ※ 신청서 상 휴대폰번호로 문자 통보
- 나.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규모 : 75개 업체 내외

- 가.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
- 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규모 변동 가능

6. 지원제외

- 가.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2]
- 나. 2024년 ~ 2026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ㄱ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시 주관)
 - ㄴ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각 구군 주관)
- 다. 2025년 ~ 2026년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각 구군 주관)
- 라.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 마. 사업자등록증명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사.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 아.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자.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 불가
 -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 차.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예시) 건설업(인테리어, 건축 등)을 영위하면서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
- 카.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타.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 (예시) 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의류소매업으로 업종 변경하면서 신규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
 -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중구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신규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
- 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7. 우대사항

- 가. 공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아카데미 또는 맞춤형 동행 컨설팅 이수자 가점 부여 (인정기간 : 2025. 9. 5. ~ 2026. 9. 4)
- 나.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업자 가점 부여
- ※ 사회취약계층 중복 해당 시 1개만 인정
- 다. 울산광역시 소재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된 사업자 가점 부여

8. 선정기준

- 가.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 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고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 나. 동점자 발생 시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 여부, 사업장 임차 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II. 세부 지원 내용

1. 단위사업별 지원 내용

단위사업	단위항목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점포환경 개선비	옥외광고물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인테리어	[내부보수(도배,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씬팅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고정식 영업시설	[영업·제조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의 교체(이동불가)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지원(사업자등록증 기준)	
홍보· 광고비	홍보·광고	[홍보물 제작(판촉물, 카탈로그 등 → 사업장명 기재 필수) [오프라인 광고(TV·라디오·신문·대중교통·게시대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위생·안전	[위생관리(매장방역·청소용역·살균·소독기 설치 등) [안전관리(소방위험물 점검 및 교체 비용, 위험물석면 등) 제거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시스템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스마트 오더 시스템·배달·애플리케이션·테이블오더 등 구매 지원 등 [서빙로봇 구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1)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지원사업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및 온라인크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신청 제외
- 3)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신청불가
- 4) 주택과 영업장이 결합된 사업장은 반드시 영업공간이 거주주택과 분리된 영업에 필요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화장실 보수의 경우 주택과 별도 분리된 공간으로 사업장 전용만 인정
- 5) 화장실 개선 시 영업시설과 동일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용화장실 및 외부화장실 신청 불가
- 6)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전기전자제품, 가구 및 집기류 등 처분 가능한)물품 및 중고 물품 구매, 렌탈 비용은 신청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쇼파,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7)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ex :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 입간판 등)
- 8) 영업크제조크판매와 직결된 고정시설크설비의 교체(이동불가)는 신청 가능
- 9)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ex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광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 10)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는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신청 불가
- 11) 동일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집안집, 합동공간중개사사무소 등)는 별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보수 등 인테리어, 고정식 영업시설, 위생크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신청 불가
- 12) 홈페이지 및 CI·BI 제작 신청 불가
- 13) 온라인 플랫폼(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 등)내 홍보·광고비용은 신청 불가
 * 오프라인 광고(전단지광고, 인쇄물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등)만 신청 가능
- 14) 신청업체가 선정 통지 후 건적 승인 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크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15)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 취소
- 16) 지원 금액은 정산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17)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2. 지원 한도액

○선정 후 제출한 건적서 **공급가액의 90%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금액 산정 (예시)

구 분	건 적 금 액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공급가액 90% (최대 한도 내)	공급가액 10% 이상	부가세	합 계
점포환경개선비	280만원	28만원	308만원	250만원	30만원	28만원	58만원
홍보광고비	230만원	23만원	253만원	200만원	30만원	23만원	53만원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200만원	20만원	220만원	18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제출 서류 목록	제출방법
필수	1. 사업지원신청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및 사업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온라인 입력
	2.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제3호 서식]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4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명(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온라인 제출 (홈페이지에서 파일업로드)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만 해당)	
	6.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유효기간이내 서류 인정,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26. 9. 4.)이후)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증명서 각각 제출	
	7. 매출액 증빙서류 ○대상연도 : 2025년, 2026년 상반기 (발급처: 무인민원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해당 시	8.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 아래항목 중 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처: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인터넷))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등록증(발급처 : 보훈(지)청, 정부24(인터넷))	
	9.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유효기간이내 서류 인정, 유효기간은 접수마감일(2026. 9. 4.)이후)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은 법인사업자만 해당되나, 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개인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선정평가 후) 선정 업체는 외주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추가서류 및 제출기한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선정 후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 시 [제9호 서식], 포기 시 [제10호 서식]

III. 사업 운영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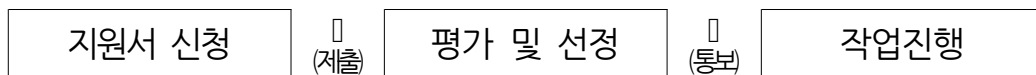
1. 선정 취소

가. 선정 통보 후 서류 제출기한(별도 통보) 내 외주(시공·제작)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미제출한 경우

나.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전 또는 선정 통보 및 서류 제출기간 동안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홍보물제작 등)을 미리 진행한 경우

○ 반드시, 사업 진행 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향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공 전 사진 필수 확보**

라. 점포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바. 사전승인 없이 외주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사. 지정기한 내 지원금 정산 신청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진행 통보 후 제출기한(약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아.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자. 신청업체에 휴·폐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카. 법 위반업체, 사업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타.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시공(제작)하는 경우

파.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가.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제9호 서식]사업변경 사전승인 요청서를 행복드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

나. 단위사업간 변경 불가

다. 변경 시 시공(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로 감액 조정하여 지급

라.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행복드림센터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제10호 서식]지원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3.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가. 신청분야가 [점포환경개선비]인 경우에 외주(시공·제작)업체는 2개 이내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
- 나. 신청분야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택
- 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 가능업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업체로 외주업체 선택
- 라.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는 취소 처리(지원금 환수 처리)
- 마.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 선택 불가
- 바. 외주업체는 공고차수별 지원규모 업체 수의 10%를 초과한 경우 외주업체로 선택 불가 (※ 외주업체 당 총 7개 업체만 시공·제작가능)
- 사.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만 외주업체로 선택 가능
(※ 제작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징구)

4.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가. 지원금 지출의 방식
 - 선정된 신청업체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행복드림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선정된 신청업체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
 - 부가세를 포함한 시공(제작)비용 전액을 신청업체가 외주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나. 시공(제작)비용은 대표(법인) 본인 통장에서 외주업체 대표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 대면 거래, 현금 입금(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송금 및 법인 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인정 불가
 - 다. 지출증빙의 방법
 - 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 이체(송금)확인증에는 입금자, 수령자,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카드결제의 경우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카드 앞뒷면 사진 등)와 카드 매출전표로 가능함.

라. 지원금 지급은 제출한 완료보고서, 사진결과물, 증빙자료 등 검토 후 정당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 지급

마.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가.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6.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선정된 신청업체는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정산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사업 진행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약2개월)이 내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금 정산 서류는 [제6호 서식]지원금 정산 신청[완료보고]체크리스트를 참고

다. 시공(제작) 결과물(시공 전후 사진 등)이 승인받은 견적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개선전 모습이 증빙 안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함.

라. 선정된 신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지원금 지급 불가)

마. 선정된 신청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바. 지원금 정산 서류 검토 후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대표 본인이 작성해야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나.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보완 기간 내 미비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라. 센터에서 시공 전 또는 후,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마. 지원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한 후 차 순위업체를 추가 선정함.

바.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표, 개인별 점수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아. 본 공고는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IV. 추진절차

□ 업무흐름도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온라인(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제출 (현장 접수는 현장접수 기간에 한해서만 현장방문접수 가능)
	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 및 선정 평가 점수 산출 □ 2차 견적 심사 및 사업진행통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 - 견적심사 시 울산광역시 소재 외주업체만 가능 (점포환경개선인 경우만 해당)
사업 진행	사업수행	□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추진
지원금 정산 및 지급	비용 선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공급가액+부가세)을 외주업체에 선 지출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현금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 정산서 제출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정산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비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행복드림센터→소상공인)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정산서류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2 ~ 3주 이상 소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별표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운수 및 창고업	H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2]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사업지원신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사항
소상공인 범위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해당 ☐ 미해당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해당 ☐ 미해당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별표1]에 적합		☐ 해당 ☐ 미해당
영위 기간	☐업력이 사업공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6. 3. 5.까지 신청가능		☐ 해당 ☐ 미해당
지원 제외 업종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2]		☐ 해당 ☐ 미해당
지원 제외 대상 (필독)	☐2024년 ~ 2026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울산시 주관) -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각 구·군 주관) ☐2025년 ~ 2026년 울산광역시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각 구·군 주관)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0”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불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해당 ☐ 미해당
우대 사항	☐공고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행복드림센터 교육, 컨설팅 이수자 * 인정기간 : 2025. 9. 5. ~ 2026. 9. 4.		☐ 해당 ☐ 미해당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다자녀·다문화· 한부모가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업자		☐ 해당 ☐ 미해당
	☐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된 사업자		☐ 해당 ☐ 미해당

- ▶ 본 참여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 필수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인은 선정이 확정된 후 외주업체 관련 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기한 내 추가 제출
하겠으며, 미제출 시 선정포기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 및 평가 시 지원금 조정여부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_____ (인)
-------	--	-----	-----------

사 업 지 원 신 청 서

【사업 참여 확인서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 ① 신청자 본인은 외주업체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등
- ② 위 사항을 위반하여 유사사업 수혜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취소,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③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진행 및 선정심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접수 현황, 선정기준, 평가 점수, 평가 내용 등)은 비공개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 안내 사항 및 공고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_____ (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귀하

1. 신청인 기본 정보

신청인(대표자)		성 별	☐ 남성 ☐ 여성
생년월일		휴대폰	

2. 사업자 등록 정보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임차현황	☐ 자가 ☐ 임차
보 증 금 (백만원)		월 세	(천원)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개업일)		상시종업원수 (대표자 제외)	(명)

3. 추진개요

단위항목	☐ 점포환경개선비(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 홍보광고비 ☐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시공(제작)내용	
※ 지원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변경하여야 함.	

4. 추진계획

※별도 페이지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필요성	

5.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간판이 보이게 촬영)



6.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전체 내부 사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②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본 동의서 징구는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표준 견적서

신청업체 :

견 적 일 : 20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 급 자	사업자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일금 원정 (₩ _____)						
품 목	규 격	수량	단가	견적금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계	
합 계							

표준 간판 견적서(예시)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외주업체 자체 견적서 사용 가능)

신청업체 : 행복드림센터

견 적 일 : 2026년 9월 21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 급 자	사업자번호	123-45-67890		
	상 호	소상공인간판		
	대표자	홍 길 동 	연락처	010-0000-0000
	주 소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업 태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	종목	간판, 광고물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일금이백육십구만오천원정 (₩2,695,000)						
간판 종류	제작 구분	사 양	규격(mm)	수량	단가	견적금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계	
LED	신규	프레임-갈바	7500*700	1	200,000	200,000	20,000	220,000	
		삼성 LED소 자	3구	100	2,000	200,000	20,000	220,000	
		채널문자- 알루미늄, 캡	650*650	8	100,000	800,000	80,000	880,000	
Flex	신규	프 레 임 - A / L Bar	5000*800	1	200,000	200,000	20,000	220,000	
		화 면 부 - 3 M Flex	5000*800	1	200,000	200,000	20,000	220,000	
		32W 2등용 전자식 안정기		3	20,000	60,000	6,000	66,000	
		장수표 32W 램프		12	20,000	240,000	24,000	264,000	
Flex	천공이	화면부 3M Flex	800*2000	2(양면)	200,000	400,000	40,000	440,000	
BI 시트지			7000*1000		100,000	100,000	10,000	110,000	
기타		설치비, 잡자 재 등			50,000	50,000	5,000	55,000	
		합 계				2,450,000	245,000	2,695,000	

- ※ 공급자 시공업체의 내용 및 품목을 빠짐없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표시하여야 함.
-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간판시공시 옥외광고업등록증 추가 제출), 견적서에는
공급자(시공업체)의 날인 필수
- ※ 시공업체 선택은 시공(견적)내용과 관련이 있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업체를 선택하여야 함.

지원금 정산 신청(완료보고)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지원금 정산 신청서[제7호 서식]		
	2. 완료보고서[제8호 서식]		
	3. 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 부가세 포함한 총 시공비용을 결제한 증빙자료		
	결제수단에 따라 선택	계좌이체	1) 국세청 세금신고용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 외주(제작)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불가한 경우(연매출 8천만원 미만)는 종이세금계산서 가능(외주(제작)업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추가 제출) 2) 입금내역 증빙서류 ☞ 계좌이체(송금)확인증 또는 모바일 송금확인증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 모두 표기)
		카드결제	1)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 ☞ "카드번호", "카드명" 등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카드 앞뒷면 사진) 2) 결제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4.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대표자(법인) 통장사본 제출		
해당시 추가	위생·안전, 홍보비 신청자에 한함		5. 거래명세서(소독·청소·안전진단, 홍보(광고) 등 시행한 경우)

- ▶ 모든 서류는 대표가 직접 작성 및 서명하셔야 합니다.
- ▶ 지원금 지급 신청 마감일까지 서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필수서류 누락 및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센터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 지급은 정산 서류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2~3주 이상 소요됩니다.

지 원 금 정 산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신청업체명		대표자	
-------	--	-----	--

2. 신청 내용

단위사업	☐ 점포환경개선비(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 홍보·광고비 ☐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총소요비용	공급가액 (부가세제외)	원	자부담금 (10%)	원	지원금 (90%)	원
외주업체 (총 : 개)	외주업체명 (1업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외주업체명 (2업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금 지급처 (소상공인 수령)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3. 청렴이행서약서

신청업체와 외주업체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수행함에 있어 다음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불이행시 당사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청업체(대표자) 본인은 모든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및 지원금을 신청한다.
- 신청업체와 외주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자부담금 경감, 자부담금 시공사 대납, 과대하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등
- 신청업체와 외주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센터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사법기관 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신청업체 대표 : _____ (인)

2026년 월 일

외주업체 대표 : _____ (인)

외주업체 대표 : _____ (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귀하

완 료 보 고 서

1. 추진개요

단위사업	☐ 점포환경개선비(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 홍보광고비 ☐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시공(제작) 내용	시공(제작) 내용		시공(제작) 기간			
	1,		2026년	월	일	~ 월 일
	2,		2026년	월	일	~ 월 일
	3,		2026년	월	일	~ 월 일
지원결과물	☐ 시공 전/후 사진 ☐ 사업 결과물 ☐ 거래명세서(홍보(광고) 등) ☐ 기타()					

2. 설치결과

※별도페이지 가능

시공(제작) 결과물	
※ 견적서에 표기된 품목(항목)이 시공 전/후 각각 개별 촬영되어야 함.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3. 사업 만족도

귀 사가 금번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점수는?

매우만족 (100ㄹ90)	만족 (89ㄹ80)	보통 (79ㄹ70)	불만족 (69ㄹ60)	매우불만족 (59ㄹ50)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_____ 점

4. 개선 및 건의사항

5. 사업수혜 후 기대효과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대 표 자	
신청분야	☐ 점포환경개선비(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 홍보광고비 ☐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포기사유				
본인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귀하				
제 출 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